

○○○씨 대종회 홈페이지 관리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(명칭) 이 규정은 ○○○씨 대종회 홈페이지 관리규정(www.jokbo.cc)이라 한다.
- 제 2 조(목적) 이 규정은 ○○○씨 대종회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)의 관리,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.
-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과 업무분담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.
 - ②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대종회 홍보에 주력한다.
 - ③ 기타 대종회 공익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.
- 제 3 조(사무소) 위원회 사무소는 대종회 직속기구로서 대종회관 내에 둔다.
- 제 4 조(수록내용) 대종회 홈페이지에는 대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선별 수록하여 대내외 홍보와 종친간의 정보교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수록한다.
1. ○○○씨 홍보자료
 - 가. ○○○씨 연원
 - 나. ○○○씨 세계분파도
 - 다. ○○○씨 항렬표
 - 라. 고려, 조선시대 인물
 - 마. 계파별 인물
 - 바. 근대 및 현대인물
 - 사. 사우·서원
 - 아. 족보간행사
 2. 가문을 빛내주신 선조님
우리가문, 충의편, 효자열부편, 학행편, 현신편, 덕행편, 종사편.
 3. ○○○씨 대종회
 - 가. 대종회장 인사
 - 나. 대종회 및 소종회 연혁
 - 다. 대종회조직(본부 및 지부)
 - 라. 대종회 임원명단
 - 마. 대종회 사업 및 행사
 - 바. 대종회 회칙
 - 사. 대종회 장학회 및 특지장학회 회칙
 4. ○○○씨 대동보 세계표 및 색인표
 5. 게시판, 동정, 공지사항 등

- 제 5 조(관리대상) ① 이 규정은 도메인(www.jokbo.cc) 내에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대중회 홈페이지 이외의 관리대상 홈페이지 지정은 ○○○씨 대중회 홈페이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에서 한다.

제 6 조(관리업무) ○○○씨 대중회(이하 “대중회”)는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운영관리, 정보관리와 사업관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운영관리
 가.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
 나. 홈페이지 개설, 폐지, 개선, 갱신 등의 운영관리
 다. 홈페이지 서버의 운영관리
 라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관리
- ② 정보관리
 가. ○○○씨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관리
 나. 대중회 사업, 각종 행사 및 알림사항 공지관리
 다. 대중회 공익에 관한 정보관리
 라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관리
- ③ 사업관리
 가. ○○○씨 홍보에 관한 사업관리
 나. 대중회 회칙을 준수하는 사업관리
 다. 종문의 대중회 참여기회 부여에 대한 관리
 라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관리

- 제 7 조(게시판) ① 게시판에 게재되는 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② 공지사항, 회원동정 등 기타 대중회와 관련하여 정확성이 요구되는 게시판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직접 등재한다.
- ③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중회를 음해하는 경우,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회원의 상업적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, 게재 시 해당게시물을 삭제하며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한다.
- ⑤ 기타 위원회가 판단하여 게시물을 이동, 삭제 할 수 있다.
- ⑥ 게시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시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 2 장 사무기구

제 8 조(구성) 위원회 구성원은 대중회 회칙과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성한다.

- ① 위원회 위원은 대중회 집행임원이 겸직한다.

- ② 필요에 의해 추가인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추가인원은 ○○○씨 성을 가진 자로 한다.
- ③ 대총회장은 관련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전담 관리위원은 총무담당임원이 겸직한다.
- ⑤ 위원회 구성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.

제 9 조(위원회 임무)

- ① 위원회는 홈페이지의 개선과 대총회 홍보에 노력한다.
- ② 위원회는 ○○○씨 홍보, 자료의 보완, 수정, 삭제, 종친동정, 기타 ○○○씨에 관련한 자료를 심의하여 등재여부를 의결한다.
- ③ 홈페이지는 대총회에서 전담 관리한다.
- ④ 전담 관리위원은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월례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된 내용을 집행한다.
- ⑤ 대총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자료 또는 대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 심의, 의결하여 대총회명의로 게시한다.

제10조(권리와 의무)

- ① 위원회 구성원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총회 및 기타 부속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홈페이지 운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며, 홈페이지회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③ 위원회 구성원은 본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상 별

제11조(시상)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에 공헌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.

제12조(징계)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, 손해배상, 형사고발 조치한다.

<부 칙>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○ ○ ○ 씨 대 총 회